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799호
- 발의자 : 박기재 의원(찬성자 9명)
- 발의일자 : 2019년 8월 1일
-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고, 때로는 성폭력 등이 은폐·축소되어 피해예술인에 대한 구제에 어려움이 나타남.
- 한편, 「예술인 복지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2019년 1월 17일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이에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예술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실명으로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최근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 확산됨에 따라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박기재 의원(중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였음.
- 문화예술인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민간 사업장 등과 같은 유형화된 조직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공연장, 전시장 등에서 임시직 및 프리랜서로 참여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최근 몇 년간 미투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인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립되는 행태가 다수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문화예술인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음.

-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남인순의원 등 10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년 3월 28일 발의하고, 같은 해 10월 16일부터 해당 내용이 시행 중에 있음.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를 통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문제가 대두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¹⁾.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1) 서울시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예술인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만을 운영 중임.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에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의 소관을 맡은 서울시 문화본부도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고 밝힘.

또한 동 개정조례안의 검토 및 심사 이후,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 및 창작환경의 실태조사와 사회적으로 사각지대로 대두된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